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인천의료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대여품목 : 서비스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수급자(혹은 보호자) 요청에 의해 유효기간에 맞춰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본인부담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이용료(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품목 수가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일반대상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9% 또는 6%)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② 복지용구의 비급여 구매 원하면 복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수가에 준하여 판매한다.
- ③ 비급여 대여의 경우 기관이 정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전동(수동)침대 : 초기 설치비 30만원(회수, 설치, 소독에 필요한 보증금 형식), 이후 4개월째부터 전동침대는 월 10만원, 수동침대는 5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 수동휠체어 : MIRAGE7(22D)-B는 월 5만원, MIRAGE22D-P는 월 4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외 : 전 기종 월 4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①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 ② 대여한 물품은 청결하게 사용하며, 애완동물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고장시에는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며 분실시에는 소정의 금액을 변상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이용상황 등 변경이 있을 때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수급자(혹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애완동물, 부주의로 인해 제품의 고장 또는 파손이 있을 때
- ⑤ 기관의 이용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